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2024.7.17.(수) 조간

배포

2024.7.16.(화)

담당부서

보험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

책임자

국 장 권재순 (02-3145-7270)

담당자

팀 장 김태훈 (02-3145-7260)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 ③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

<주요 내용>

- ① '경유계약'이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②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은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관행에 주로 기인합니다.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영업행태는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며, 특히, 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큼니다.

- ③ 금융감독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④ 만약,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상이하다면 해당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험소비자께서는 청약 시 받은 명함, 서류 등을 꼼꼼히 살피셔야 하며,

아울러,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의 경우 보장성보험을 마치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 보장내역 등도 꼼꼼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동 연속기획 보도자료는 빈번하게 적발되어온 주요 위법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자료로 모든 규제사항을 포괄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 시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5월부터 GA의 주요 위법사례 및 향후 검사·제재 방향 등을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전파하고 있으며,
 - 지금까지 2회에 걸쳐 ①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및 ②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 이번에는 연속기획 세 번째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연속기획물 >

회 차	주 제 (보도일)
1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검사·제재 방향('24.5.28.)
2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24.6.25.)
3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

II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의 의미

- (경유계약)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이하 ‘실제 모집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이하 ‘경유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이러한 경유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보험업법」 제97조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후략)

□ (수수료 부담지급)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수수료 부담지급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예외) ①설계사가 같은 보험회사·GA·중개사에 소속된 다른 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GA가 소속 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GA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경유계약 시 GA 또는 경유설계사가 자격이 없는 실제 모집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GA나 경유설계사는 수수료 부담지급 금지 위반으로 동시에 제재

<참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후략)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생략)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위탁자가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가. 보험설계사가 같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후략)

□ 舊 「보험업법」 (舊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생략)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2. 보험대리점: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후략)

Ⅲ 발생 원인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발생 원인)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은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관행에 주로 기인합니다.

- 경유계약은 설계사가 이직 과정* 또는 업무정지 상태에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나, 높은 시책을 얻기 위해 계약을 특정 설계사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 이직 후 보험회사로부터 새로운 판매위촉코드를 받지 못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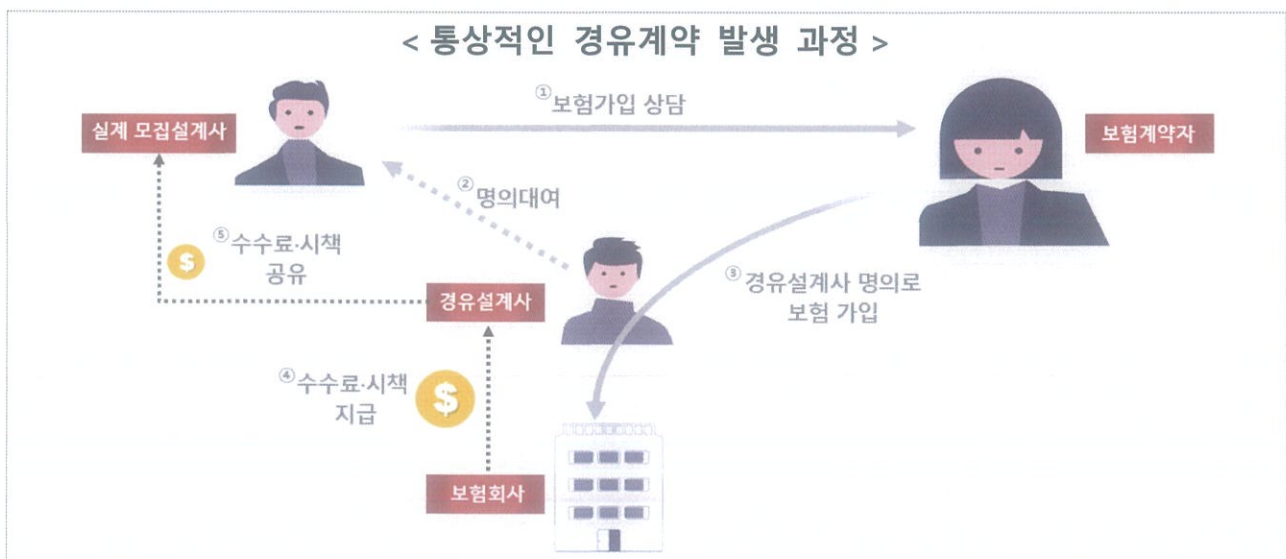
** (예) ①보험회사에서 특정 상품에 대해 대규모 시책을 책정 → ②설계사 A의 판매실적이 부족하여 설계사 B가 해당상품 계약을 설계사 A 명의로 체결(경유계약) → ③설계사 A는 목표를 달성해 시책 대상자로 선정 → ④설계사 A는 B와 혜택(시책) 공유

- 아울러, 수수료 부당지급은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과 같은 변칙적인 보험영업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Ⅲ.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 참고

□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영업행태는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며,

- 특히, 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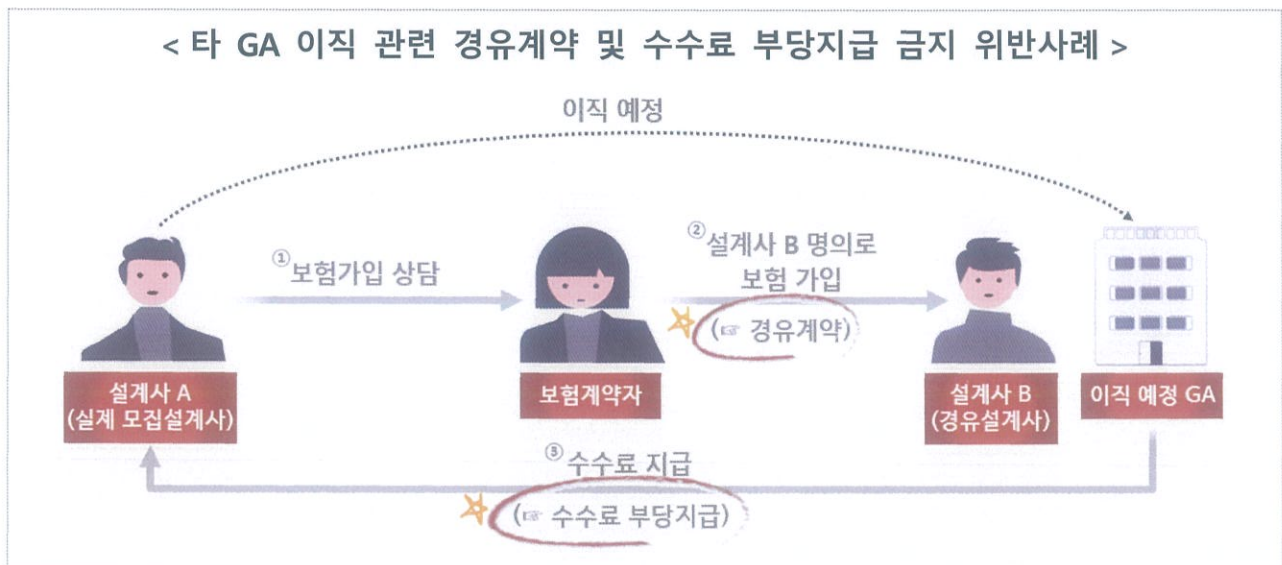


IV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

※ 최근 금감원 검사에 적발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를 소개

① (타 GA 이직) 타 GA로 이직을 앞둔 설계사 A는 기존 소속 GA로부터 받을 수수료(유지수수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기존 GA 소속을 유지한 채 이직할 GA 소속 설계사 B의 명의로 신규 모집계약을 체결(경유계약)하였고,
- 이직 대상 GA는 자사에 소속되지 않은 설계사 A에게 신규 모집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수수료 부당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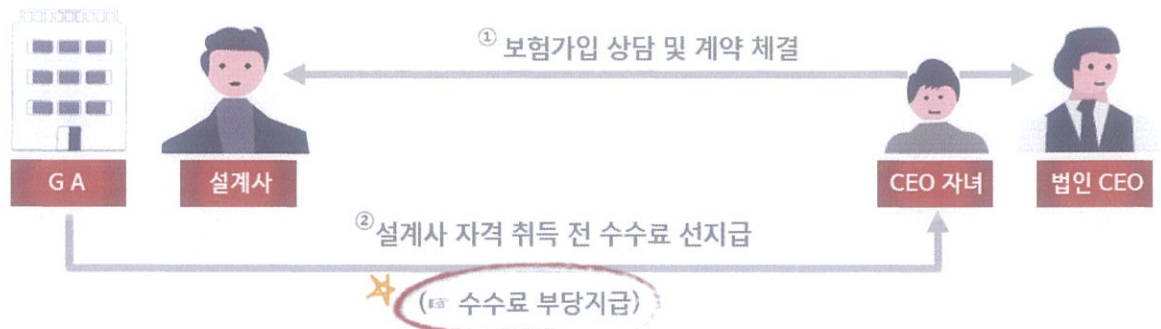
② (کمش랑스 영업) 법인 CEO를 대상으로 하는 소위 ‘کمش랑스*’ 영업은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영업건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입니다.

* 법인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한 후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를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영업방식(Company와 Insurance의 합성어)

- 일부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의 자녀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수수료 부당지급).

* CEO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지속 실패하자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사 자격이 없는 자녀에게 수수료를 부당지급

< 컴슈랑스 영업에 따른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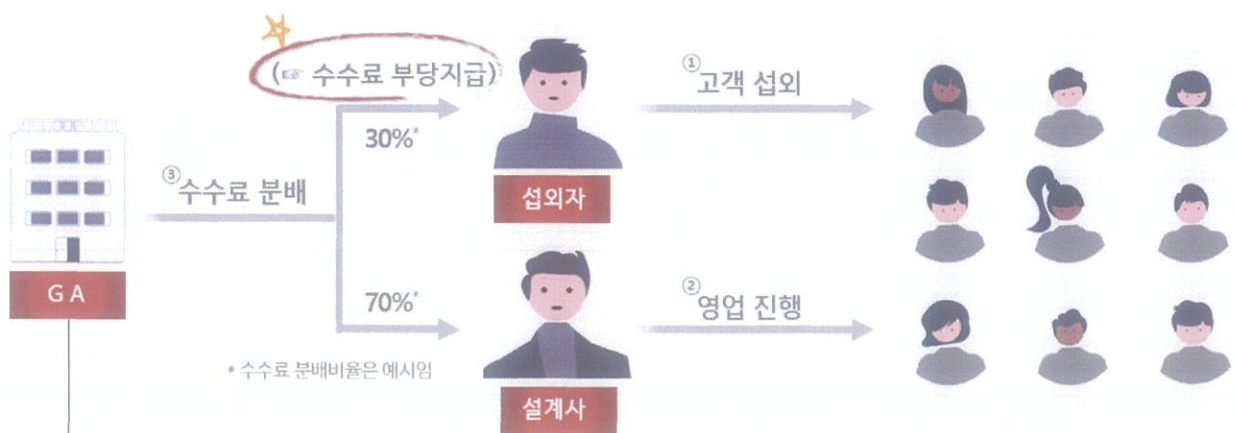


- ③ (브리핑 영업) 브리핑 영업은 의무교육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고객을 한 장소에 모은 후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의 영업으로, 통상 **섭외조직***(의무교육 등 실시)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다수의 고객을 모아 설계사에게 보험 모집기회를 제공하고, 보통 계약 체결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수령

- 일부 브리핑 영업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섭외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수수료 부당지급).

< 브리핑 영업에 따른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 >



섭외활동 유형 예시

- 교육 섭외: 산업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법정 의무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며 섭외
- 일반 섭외: 사은품(대장암 진단기, 도시락, 회식비 지원 등)을 미끼로 섭외
- 공문 섭외: 정부기관, 관공서,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여 상품 설명회 마련
- 골프장 섭외: 골프장에서 식사비·골프용품 등을 제공하며 설명회 마련
- 가족지인 섭외: 섭외자 개인인맥을 이용하여 회사 또는 단체 섭외

V 위반 시 제재 양정기준 및 최근 제재 실적

□ (제재 양정기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의 정도에 따라 금전제재 및 기관·신분제재가 부과됩니다.

- 경유계약의 경우 위반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134조, 제136조, 제209조

- 수수료 부당지급의 경우 위반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고, 시정·중지·게시명령 등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1조, 제52조, 제69조

<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에 대해 부과 가능한 조치 >

구 분	GA	GA 소속 임직원	GA 소속 설계사
경유계약	등록취소, 업무정지(6개월 이내), 과태료(1천만원 이하), 주의·경고 등	주의·경고·문책(임직원), 해임권고·직무정지(임원)	과태료(1천만원 이하), 등록취소, 업무정지(6개월 이내)
수수료 부당지급	과태료(3천만원 이하), 시정명령, 중지명령, 게시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임원),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직원)	과태료(3천만원 이하), 시정명령, 중지명령, 게시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 (최근 제재실적) 지난 4년간('20~'23년)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GA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총 35억원) 등이 부과되었고,

-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감봉 등,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30~90일), 과태료(20~3,500만원) 등이 부과되었습니다.

< 최근 4년간('20~'23년)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관련 제재현황 >

구 분	기관 제재	임직원 제재	설계사 제재
경유계약 (35개사)	등록취소: 1개사 업무정지(30~90일): 4개사 총 과태료 17억 1,210만원 기관경고: 1개사 기관주의: 3개사	직무정지(3월): 1명 문책경고: 2명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3명 퇴직자 위법사실통보: 3명	업무정지(30~90일): 36명 과태료(20~3,500만원): 206명
수수료 부당지급 (38개사)	등록취소: 3개사 업무정지(30~90일): 3개사 총 과태료 17억 8,370만원 기관경고: 2개사 기관주의: 2개사	해임권고: 3명 감봉: 5명 직무정지(3월): 2명 문책경고: 12명 주의적 경고: 15명 주의: 7명 퇴직자 위법사실통보: 2명	등록취소: 1명 업무정지(30~90일): 31명 과태료(70~3,500만원): 66명

주1) '20~'23년(조치요구일 기준) 보험검사3국의 GA 지적사항 중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관련 지적사항만 추출
주2) 제재 병과 시 인원수 별도 계산(예: 업무정지 30일 & 과태료 50만원 → 업무정지 +1명, 과태료 +1명)
주3) 수수료 부당지급 관련 제재현황은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건을 정리

VI 향후 계획 및 소비자 당부

- ① GA 영업현장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만큼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특히, 기관제재(GA 영업정지 등)를 강화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 ② 향후 금융감독원은 컴슈랑스 영업,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상시감시 및 검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해당 영업방식은 수많은 불완전판매를 야기하고 건전한 모집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큰 만큼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 ③ 만약,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상이하다면 해당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험소비자께서는 청약 시 받은 명함,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셔야 하며,
 - 아울러,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의 경우 보장성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 보장내역 등도 꼼꼼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붙임1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 조치사례
-----	----------------------------

회사명	조치요구일	위법 내용
OO 보험대리점	'21.7.7.	<경유계약 금지 위반> 설계사 甲은 <u>OO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새로운 판매위촉코드(설계사코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u>*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고객의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가왔고,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만기가 도래하면 고객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다른 설계사의 코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 이직 후 보험회사로부터 새로운 판매위촉코드를 받아야 하나 아직 받지 못한 상태 결국 설계사 甲 등 42명은 2016.7.1. ~ 2019.6.27. 기간중 647건의 보험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고OO 등 4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억 4,960만원을 지급받았다. OO보험대리점에게는 과태료 2억 6,490만원과 기관주의, 소속 설계사에게는 과태료(20~3,500만원)와 업무정지(30~90일)가 부과되었다.
□□ 보험대리점	'21.11.19.	<경유계약 금지 위반> 자녀를 설계사로 육성하고 싶었던 설계사 丙은 자녀가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자 총 235건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자녀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결국 설계사 丙 등 14명은 2018.3.7. ~ 2020.6.29. 기간중 384건의 보험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조OO 등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억 1,030만원을 지급받았다. □□보험대리점에게는 과태료 1억 5,150만원과 업무정지(30일), 前 대표이사 2인에게는 주의 및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소속 설계사에게는 과태료(20~3,500만원)와 업무정지(90일)가 부과되었다.
△△ 보험대리점	'23.7.27.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 브리핑 영업 전문 GA인 △△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의 보험 상품을 모집하면서 <u>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섭외조직과 함께 영업을 하였다.</u> △△보험대리점은 2018.8.9.~2021.3.19. 기간중 1,18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강OO(섭외자) 등 107명에게 총 2억 7,05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보험대리점에게는 과태료 1억원, 대표이사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부과되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업무자료 - 검사·제재 - 제재관련 공시' 메뉴에서 제재내용 확인 가능

붙임2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후략)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6. (생략)

7.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후략)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직무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제136조(준용) ①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제209조(과태료) ①~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생략)

7.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9. (생략)

10.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 (후략)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후략)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정한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후략)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후략)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7. (생략)
8.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9~13.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4. (생략)

5.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후략)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생략)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위탁자가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가. 보험설계사가 같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나.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후략)

제4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후략)

④ 법 제5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2. 수사기관에의 통보
3. 다른 행정기관에의 행정처분 요구
4. 경영이나 업무에 대한 개선 요구 (후략)

제4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후략)

[별표1]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기준(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 관련)

1~14. (생략)

15.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후략)

□ 舊 「보험업법」 (☞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생략)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2. 보험대리점: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후략)

제209조(과태료) ①~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생략)

7.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제95조의4·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후략)